

심민정(부경대 강사)

1. 머리말
2. 부산으로의 표류왜인 호송
3. 양미와 잡물 지급
4. 체류지에서의 접대 음식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표류일기』는 사츠마번[薩摩藩] 출신 무사인 야스다 요시카타[安田義方]¹⁾가 오키노에라 부지마[沖永良部嶋] 근무 후 에도로 돌아가던 도중에 조선에 표류한 과정을 쓴 일기이다. 현재 이 책은 고베대학 도서관의 스미다문고[住田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을 인터넷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²⁾ 그리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번역서가 국내에서 출간되어³⁾ 자료에 접근하고 활용하기 훨씬 쉬워졌다.⁴⁾

특히 선명한 색으로 그려진 삽화, 꼼꼼하게 정리된 필담 내용 등은 당시 조선의 모습이나 표류인에 대한 처우 등을 세세하게 알려준다. 이 책의 역자는 그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세기 초반 조선인의 모습과 복장, 송환시 이동한 해로 및 체류한 포구의 모습, 장기간 머물렀던 부산 해역의 풍경 등에 대해, 책머리에 간단하게 해제 형식으로 설명을 담았다.

본인도 이 책에 그려진 그림 중 음식상찬도[食卓圖]에서 시선을 땔 수 없었다. 일본 사신에 대한 접대를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명한 색감과 세밀하게 그려낸 음식의 모습은 표류인 접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일기의 필자인 야스다 요시카타는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무사였기 때문에 일반 표류민들과 다른 접대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추측도 더해졌다. 실제로 조선 측에서 제공한 물품, 음식 등은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담당 관원들의 태도도 공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야스다 일행들에게 베풀어준 마지막 전별연에서는 당시 東萊府使였던 朴綺壽가 야스다를 비롯한 일본인 관직자(官職者) 2인에게 일반 왜인들보다 접대 대우를 격상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장계를 올리는⁵⁾ 등 어느 표 왜와는 접대가 달랐다.

본고에서는 표류왜인에 대한 잡물 등 접대 규정을 『증정교린지』, 『변례집요』 등의 조선 측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고, 실직한 접대 양상과 실태는 어떠한는지 『조선표류일기』를 분석하여 살펴본다. 분석 대상은 충청도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동안 체류한 체류지역의 접대로 한정하고, 부산 지역의 접대는 비교 대상으로 활용한다. 부산 지역에서의 표류민 접대 실태는

1) 安田義方の 자(字) 중 하나가 元方이어서 내용 중 安田元方을 이름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
2) <http://www.lib.kobe-u.ac.jp/directory/sumita/5B-10>. (이근우·김윤미 역, 『조선표류일기』, 소명출판, 2020, 6쪽 재인용)
3) 이근우·김윤미 역, 『조선표류일기』, 소명출판, 2020. 5. 30.
4) 『조선표류일기』는 일본에서 먼저 연구되어 『薩摩藩士 朝鮮漂流日記』(池內敏, 講談社新書, 2009)가 출간된 바 있다.
5) 『비변사등록』 순조 19년(1819) 10. 5.(음).

차후 다른 지면을 빌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2. 부산으로의 표류왜인 호송

야스다 요시카타 일행은 1819년 6월 4일 사츠마로 향하던 중 표류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현(庇仁縣)에 표착하였다. 이들이 탄 배는 귀수환(龜壽丸)이고 뱃사람은 총 25인이었다. 비인현 마량진(馬梁鎭) 내에 있는 안파포(安波浦)에 머물면서 비인태수 윤영규(尹永圭) 등의 접대를 받고 조사를 거친 후 그들의 배를 불태우고 조선 배로 옮겨 타 부산으로 이동한다. 부산에 머무르면서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야스다 일행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선에 표류한 일본인은 크게 대마도 왜인과 타 지역 왜인의 두 부류로 구분하여 호송하는 장소를 달리하였다. 대마도 표왜의 경우 표착(漂着)하면 왜관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때 왜관에서는 매 선적마다 양미(糧米) 2섬, 1인당 옷 재료[衣資]로 무명 1필을 제공해 주었다.⁶⁾ 반면 대마도 이외 지역에서 표류한 왜인은 타도표왜(他島漂倭) 혹은 심처왜(深處倭)라고 불렀는데⁷⁾, 이들은 왜관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좌도(左道)에 표류한 자는 별차(別差)가 문정(問情)하고 왜관에서 20리 떨어진 우암포(牛巖浦)로 이송한다. 우도(右道)에 표류한 사람은 옥포(玉浦)의 역학(譯學)이 문정하여 다대포(多大浦)에 이송하였다. 그 후 관왜(館倭)가 와서 서로 만난 후 왜관을 볼 수 없는 외양(外洋)으로 우회하여 우암포로 이동, 정박하였다. 또한 호남이나 영동의 여러 도에 표류한 자는 서울에서 문정관(問情官)을 보내거나 혹 해당 도의 역학으로 하여금 문정하게 한 후 우암포로 이송하게 했다.⁸⁾

야스다 일행의 경우 타도표왜에 해당하며, 호남을 거쳐 우도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파견된 문정관의 조사를 받고 다대포로 간 후 다시 우암포로 이동하는 경로를 밟아야 했고, 실제로 정해진 규정대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충청도 서천 안파포를 출발해 부산 우암포(牛岩浦)에 이르는 동안 조선 서남해안 각지에 머무르고, 배를 갈아타기를 반복했다. 조선 측의 군사상 수로 경로 비밀 방침 등에 의해 모든 지명이 다 기록되지 않는 데, 기록된 곳을 중심으로 거쳐간 경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충남 서천군 비인현 **안파포**(7/27 출발, 서천만호가 호송) → (7/27) 서천 **가야소도**(佳也召島)⁹⁾(체선) → (7/27) 만경 **고군산**(고군산진수군첨절제사 조대영, 체선) → (8/2) **위도**(蟬島) → (8/4 저녁) **수도**(水島, 임자도첨사 박국량, 지도만호 오자명 도착) → (8/7) 체선함. 절충장군행수군 첨절제사 박국량(朴國良), 수군만호 오자명(吳子明)이 영호사로 교체됨 → (8/9 저녁) 나주 **팔금도**(八禽¹⁰⁾島) → (8/10) **이가도**(二家島)¹¹⁾ → (8/15 저녁) 좌도(左道)의 항구 → (8/24) 경상도 **순천**¹²⁾ → (8/25) **거제 옥포** → (8/29) **가덕도** → (8/30) **다대포**(대마도 관선으로 이동, 30일 체류) → (9/30) **우암포**

『조선표류일기』 권5~권7 참조

6) 『증정교린지』권2, 馬島漂倭.

7)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8) 『증정교린지』권2, 他島漂倭.

9) 지금의 개야도(開也(召)島)로 추정됨.

10) 원문에는 ‘八金島’라고 되어 있는데, ‘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1) 이 지명은 조선인이 알려주지 않아 야스다가 임시로 붙인 지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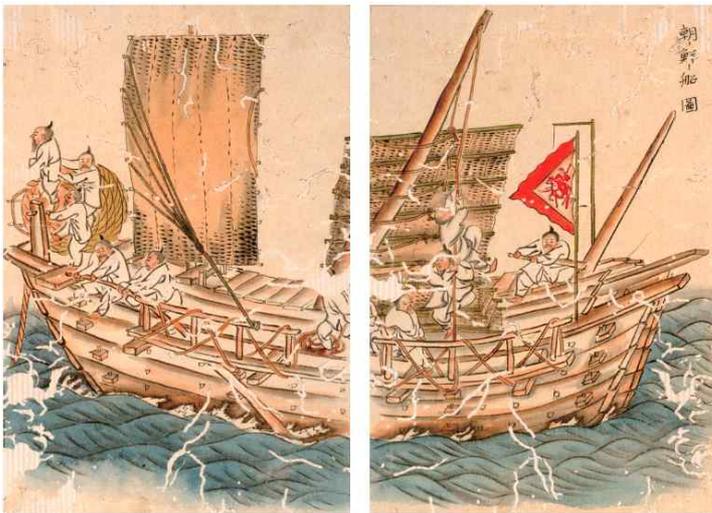
12) 전라도 순천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경남 통영시 옥지면 두미리에 있는 순천으로 추측된다.

전라도 순천은 내륙 쪽이기 때문이다.



그림 1. 사츠마번 표류왜인 체류지
고 부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선의 배로 이동을 결정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서울에서 파견한 문정관 조명오는 이전의 사례에서 조선 배로 호송한 적이 없다며 한사코 배를 수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스다 측 선척의 선장은 ① 경오년(1810) 7월 마츠무라 요시에몬[松村良右衛門] 선장이 표착하였는데, 배가 파손되어 조선 배로 쓰시마로 송환한 일, ② 15-16년 전에는 선장 나카무라 히코우에몬[中村彦右衛門]이 관선 영수환(永壽丸)을 타고 표도하였는데, 배가 부서져서 조선 배로 쓰시마로 송환된 일, ③ 20년 전에는 남녀 여러 명이 탄 조선 배가 일본 야쿠시마(屋久島)에 표착하여 야마카와(山川)로 송환하였고, 그런 다음 본부(本府, 사츠마번) 사관(士官) 하나다 겐스케(花田源助), 선장 에나미 로쿠베(榎並六兵衛)가 관선으로 나가사키(長崎)까지 송환한 일을 예로 들어¹³⁾ 조선 측 선척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13) 『조선표류일기』 권4. 7월 17일.(음)

14) 『조선표류일기』 권4. 7월 24일.(음)

표류 왜인들은 배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조선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해안을 이동할 때에는 야스다가 배멀미로 인해 기록을 하지 못했으므로 체류 지역을 모두 알 수 없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대체로 내륙과 접한 포구보다는 내륙과 어느 정도 떨어진 섬들에 체류하면서 이동하고 있으므로 남해안에서도 섬에 체류하는 방식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야스다 일행이 부산으로 이동할 때에는 여러 해안 지역에서 배를 갈아타는 체선(遞船)의 방법을 이용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 타고 온 배가 운항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야스다 일행은 배를 수리하여 이동하려 했지만 곳은 날씨가 이어지고 배의 파손 정도가 심해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 조선의 배를 타

조선 조정의 처분으로 표류왜인들과 물품들을 싣고 갈 조선의 배 2척이 마련되었고, 차사원(差使員)을 분정(分定)하여 여러 지방을 거쳐 고국에 돌려보내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문정관 조명오가 알려왔다. 그러면서 돌연 송환 비용[駕船價米]을 요구하기¹⁴⁾ 시작한다. 조명오의 송환 비용 요구는 이후 재차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의 요구와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의 표류민이 에도에 이르러 표류한 배가 파손되지 않았으면 그 배를 호송하여 돌려보내고, 만약 그 배가 부서졌다면 귀국의 배가 우리나라 경계까지 끌고 옵니다. 이 경우에는 배를 탄 비용[駕船價米]으로 쌀 50가마를 받아 갑니다. 귀국 사람들은 이런 전례에 따라 목록을 제시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글로 말하기를, ‘귀국의 목록법은 금은이나 혹은 구리 종류를 내는데 지금 다른 것이 있으면 배 안에 있는 여러 물품 중에서 내어도 좋습니다.’라고 하였다.¹⁵⁾

② 주부(조명오)가 글로 말하기를, “귀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표착하면 선가미(船價米)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귀국에 표착하면 바로 가선미(價船米)를 요구하여 받아가니, 도무지 예의도 없고 도리도 없습니다. 차후에 혹시 우리나라 사람이 귀국에 표착하면 가선미 일체를 논하지 않기로 서로 약조합시다.”라고 하였다. (중략)

주부가 글로 말하기를, “전에 듣건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 표류인을 데리고 와서, 후에 가선가(駕船價, 환송비용) 50가마를 받았다고 합니다. (환송비용을) 받으러 오는 것은 지극히 예의도 없고 도리도 아닙니다. 이러한 뜻을 에도에 전달하여 훗날 다시 받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서로 약조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¹⁶⁾

조명오가 말한 요지는 이렇다. 일본인이 조선에 표착했을 때에는 조선 조정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일본 측에 송환 비용을 요청하지 않지만, 조선인이 일본에 표류했다가 다시 조선으로 송환되면 송환 비용(쌀 50가마)을 요청해서 받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池內敏은 조명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대마도의 표인영래차왜(漂人領來差倭)가 조선 표류민을 송환해 올 때 조선 측 배가 파손되었으면 왜선에 태우고 격왜(格倭) 4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때 조선에서 도해량미(渡海糧米) 44가마를 지급한다. 이 때의 도해량미는 대마도 측에서 필요 이상으로 요구한 것이지 에도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¹⁷⁾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마도 측의 도해량미 요청은 이유가 있는 요청이기도 했다. 조선 표류민 송환 과정에서 도해량미를 받아가는 경우는 왜선(倭船), 즉 대마도 측의 배와 격군을 이용했을 경우이다. 즉 도해량미는 대마도 격군에 대한 인건비인 동시에 대마도 선척 대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일본 측에서 조선 표류민을 송환하기까지 의복과 식량 등의 비용은 막부와 표착지의 영주, 그리고 대마도가 나누어 부담한다. 선박이 파손되었을 경우 표착지의 영주는 조선표류민에게 의복과 식량을 접응하고, 나가사키에서 대마도까지 가는데 드는 접응 비용은 막부가 부담한다. 그리고 대마도에서 부산 왜관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은 대마번의 부담이다.¹⁸⁾ 일본 내에서 조선표류민의 이송 과정에서 일본 측이 어떠한 비용 요구 없이 무상으로 호송하고 있다는 점, 조선 내에서도 일본표류민을 무상으로 호송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표류민은 대마도가 조선의 땅까지 데려다 주는 반면 조선은 일본표류민을 일본 땅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 여기에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차후 조선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조선표류민을 대마도의 세견선이나 송사선에 싣고오는 ‘표민순부(漂民順付)’¹⁹⁾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15) 『조선표류일기』 권4. 7월 24일.(음)

16) 『조선표류일기』 권5. 7월 26일.(음)

17) 池內敏, 앞의 책, 138~139쪽.

18) 이훈, 앞의 책, 122쪽; 池內敏, 앞의 책, 138쪽.

19) 『증정교린지』권2

일정 부분 대마도 측의 송환 비용 요청이 이해가 되지만 조선 조정에서 별도로 선척을 마련하여 호송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암포에 일본표류민이 도착하기 전까지 드는 비용은 모두 연해읍민의 부담이었고, 조선 조정으로부터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기²⁰⁾ 때문이다. 야스다의 기록에서처럼 조명오가 금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표류민을 호송하고 접응하는데 드는 비용을 염려했기 때문에 송환비용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직도 하다.

이처럼 선척의 파손, 송환 비용, 풍세(風勢)의 불리²¹⁾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야스다 일행은 무사히 부산의 다대포로, 우암포로 호송되었다.

3. 양미와 잡물 지급

일본인 표류민들은 서전에 표착하면서부터 해안을 따라 부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접대를 받았다. 접대에는 사연(賜宴)과 같은 음식 접대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양찬(糧饌)과 약재(藥材) 등의 응급 구호 물품, 땀감 등의 필요 물품 제공까지 모두 포괄한다. 본 장에서는 여러 접대 중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양미와 잡물 지급 실태를 확인해본다.

양미와 잡물 지급 실태는 표착지, 체류지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조선 조정에서 규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일본인들의 요청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구별되었다. 특히 표착지와 체류지를 거쳐 부산(동래)에 도착하면 대마도 표왜에게는 귀국할 때 매 선(船)마다 양미(糧米) 2가마와 1인 당 무명 1필을 지급하였고²²⁾, 타도표왜에게는 우암포에 머무르는 동안 요미(料米)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요미는 한 사람 당 매일 쌀 2되, 백합젓 6작 7리, 미역 5전(錢) 3푼 7리, 소금 6작 7리, 대구어 1조(條), 건어 1마리, 참기름 2작, 채소 값에 해당하는 쌀 5홉, 생잡어 값에 해당하는 쌀 6홉 등을 지급한다. 그리고 귀국할 때에는 무명 1인 1필과 도해량미 각 10말을 지급²³⁾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하지만 부산으로 들어가기 전 표착지와 체류지에서는 양미와 잡물 접대가 일정하지 않았다. 대마도 표류민과 타도표왜가 달랐으며, 지역별로 조달 능력에 차이가 있었고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 단일한 규정을 정하기 힘들었다. 그래도 대체로 사례화된 양찬의 지급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동래 경계상에 정박시 표류왜인에 대한 지급

지급대상	지급내용(1일 1인 기준)	쌀 환산
送使, 대·소차왜, 館守, 裁判, 代官, 禁徒, 先問頭倭, 서기, 의사, 通事, 僧倭	料米 5되, 말린 대구어 5條, 말린 광어 5조, 참기름 5작, 간장 2홉, 백합젓 3홉, 미역 1냥, 생선 1마리, 건어 3마리	3말 2되 9홉 8작
從人, 下禁徒, 下代倭	料米 3되, 말린 대구어 3조, 말린 광어 3조, 참기름 3작, 간장 2홉, 백합젓 2홉,	2말 3되 5홉 1작

20) 이훈, 앞의 책, 172쪽.

21)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기묘(1819) 8월. 기사에서는 야스다 일행이 다대포에 도착하고도 풍세가 불리하여 오랫동안 유박(留泊)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2) 『증정교린지』 권2, 馬島漂倭.

23) 『증정교린지』 권2, 他島漂倭.

	미역 7錢, 생선 7조, 건어 2마리	
格倭	요미3되, 말린 대구어 2조, 말린 광어 2조, 참기름 2작, 간장 1홉, 백합젓 2홉, 미역 5전, 생선 3조, 건어 1마리	10되 5홉 5작

※ 『증정교린지』 권4, 「漂倭支給」 참조.

표 1. 의 양미 지급 기준은 동래 경계 상에 정박한 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급 대상 신분예 따라 지급하는 양찬에 차이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동래 경계 밖 좌도와 우도 연해에 표류인이 정착한 경우는 ‘양찬(糧饌)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야스다 일행의 경우 동래 경계 밖에 정박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야스다 일행은 표착지와 체류지에서 표 1. 의 규정에 훨씬 못 미치는 양미와 잡물을 제공받았다. 체류지에서 제공받은 양미와 잡물들은 표 2. 와 같다.

표 2 . 체류 지역별 조선 측 제공 양미와 잡물

지역 (제공자)	제공일	제공 양미와 잡물	비고
비인현 (비인태수)	7/10	·양미(糧米) 2섬 ²⁴ 7말 5되(37말 5되)	·7/6~10(5일분) ·양미 1일 3시 지급, 매시 1인 1되씩(양미 1일 분 7말 5되)
		·장(醬) 2말. 호박 3개. 조기 1속.	·7/6~10(5일분)
	7/12	·백미 1섬. 호박 4개. 된장 1말 5승.	·7/11~12(2일분)
	7/15	·쌀 1섬 7말 5되. 장 2말 2되 5홉. 호박 6개.	·7/13~15(3일분)
	7/18	·쌀 1섬 7말 5되. 장 2말 2되 5홉. 호박 6개.	·7/16~18(3일분)
	7/22	·쌀 2섬. 장 3말. 호박 8개. ·딸나무 3단	·7/19~22(4일분) (딸나무 식사 때마다 한 단씩 매일 3단)
	7/24	·딸나무 3단	
	7/25	·딸나무 3단 ·생닭 3마리, 생선 3마리	
		·쌀 1섬 7말 5되, 호박 6개, 굴비 2속 5마리.	·7/23~25(3일분)
7/26	·쌀 1섬. 소금 1말, 호박 2개, 가지 10개, 장 1말, 딸감 6단	·7/26~27(2일분) ·하루 양식 추가 선지급함.	
서천 가야소도 (서천만호)	7/27	·양미(糧米) 5말, 호박 3개	
고군산 (고군산첨사)		·양미 및 딸감 지급 없음.	·7/27~8/2
위도	8/2	·양미 2가마니 중에서 한 가마니는 본	·위도에서 4일분을 지급한 것으로

(고군산첨사)		선, 학꽁치[沉魚] 60마리 중에서 30마리는 본선, 미역 5줄 중에서 2줄은 본선, 굴비 10마리 중에서 5마리는 본선, 가지 25개 중에서 5개는 본선, 새우젓 5말 중에서 2말은 본선, 멸감 20단 중에서 10단은 본선, 소금 3말, 토장 1단지	보이는데 환산가가 정확하지 않음.
수도 (고군산첨사)	8/6	•양미 4말 5되, 미역 22단, 건어 15마리	•1일분. •1일 양미는 1인당 1끼 1되씩 3끼분이 지급된다. 때문에 양미 4말 5되는 15인분이다. 야스다가 탄배에 15인이 있었던 것인지, 10인분이 미지급된 것인지, '7말 5되'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수도 (고군산첨사)	8/7 오전 10시경	•양미 15말, 염청어 10마리, 미역 4다발, 멸감 3단.	•8/7~8(2일분) •다음 날까지 지급
수도 (임자도첨사 박국량, 지도만호 오자명)	8/8	•채소 약간 지급	

야스다 일행은 비인현에 표착하여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으므로(23일 체류) 비인태수가 지급한 양미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표류인에게 지급된 하루 양미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쌀 3되였으며 하루 치 멸감이 또한 3단씩 지급되었다. 표류인들에게 지급되는 양미는 1인 1일 3끼니 지급이 기본이었던 것 같다. 야스다가 비인현을 떠나기 전 조선 조정에 쓴 편지에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끼 당 쌀 1되씩(3끼, 총 3되)'²⁵⁾ 받았다고 하였으며, 수도(水島)에서 양미를 지급받을 때에도 조선 관인이 '1일 1인 1끼니의 양미 1되는 조정이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읍에서도 문서와 장부에 따라 행하니 차후에도 이와 같을 것'²⁶⁾이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701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는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쌀이 1인 1일 2되가 정량²⁷⁾이었다고 한다. 어느 시점부터 바뀐 것인지, 혹은 야스다 일행이 일반 표류민보다 좋은 처우를 받았던 것인지는 추가로 자료를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소금과 야채, 장류, 생선 등이 지급되었다. 비인태수는 '표류민에게 지급되는 양미와 반찬이 무릇 백 여 가지'라고 했으니²⁸⁾ 체류 지역에서 담당자와 읍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비인태수는 양찬 지급 등의 접대는 자신이 직접 주관하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문정관이 야스다를 방문했을 때 야스다가 문정관에게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자 태수 운영규는 자신은 문정관 소속 관리가 아니고 조선 조정에 속한 관리이니 요청 사항이 있으면 직접 요청할 것을 야스다에게 당부하였다.²⁹⁾ 운영규는 물품 요청과 지급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 및 확인하게 하고, 중간 중간 개인적으로 선물 받은 물품도 '선물로 주었다'는 문서로 남겨주기를 요

24) 1섬은 15말로 환산된다.

25) 『조선표류일기』 권5. 7월 25일.(음)

26) 『조선표류일기』 권6. 8월 6일.(음)

27)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378-379쪽.

28) 『조선표류일기』 권4. 7월 21일.(음)

29) 『조선표류일기』 권4. 7월 21일.(음)

청하는 등 조선 조정의 관리로서 조정에 보고해야 할 사안들을 세심하게 점검했던 듯하다.

한편 동래부에서 '5일양찬(五日糧饌)'이라고 하여 필요 양미와 잡물을 5일마다 한 번씩 지급 하였지만 표착지역이나 체류지에서는 5일분씩 나눠 지급하지는 않았다. 표에서처럼 5일, 3일, 2일 분 등 물품이 준비되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표착지였던 비인현을 제외하고 다른 체류지에서는 1인 1일 1끼 1되씩 총 3되의 양미가 지급되는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비인태수가 야스다 일행 출발 시 양식 1일분을 선지급했기 때문인지 서천 가야소도에서는 양미 5말과 호박을 지급했을 뿐이며, 고군산에서는 5일 동안 머무르면서 기본 양미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스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³⁰⁾

이처럼 조선 조정에 지급 내역이 보고되면서 지급되는 물품도 있지만 표류인들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물품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요청에 의해 별도 지급된 물품은 다음 표 3. 과 같다.

표 3 . 표류인 요청 물품 및 제공

지역(피요청자)	요청 물품(날짜)	지급 내용(날짜, 지급자)
비인현(비인태수)	딸나무(7/11)	딸나무 3단(7/22, 비인태수) → 한 번 식사할 때마다 한단씩 매일 세 단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함.
	생선과 닭. 파, 부추, 가지, 오이 등 채소(7/13)	
	돛자리 100장. 긴 나무 50개(7/13)	돛자리 8장. 쇠고기 수육.(7/15, 비인태수)
비인현 (문정관 조주부)	닭과 생선(7/14)	
비인현(비인태수)	닭과 생선 재요청(7/15)	•닭 3마리(7/15, 비인태수). •생선 3마리(민어1, 농어2). 마늘 20개. 파 3단.(7/16, 비인태수)
	쭈(7/17)	쭈(7/17, 비인태수)
	젓지 않은 돛자리 8개(7/18)	
비인현 (문정관 조주부)	돛자리 재요청.(7/19) 닭과 생선 추가 요청(7/19)	•돛자리(7/19) •생선 3마리(7/20, 비인태수) •닭 3마리(7/21, 비인태수)
비인현(비인태수)	소금(7/21) 돛자리 재요청(7/21)	•소금은 격일에 1되와 1/3씩 지급할 것 이라 답변함. •마른 돛자리 8속(7/21, 비인태수)
	소금 재요청. 담배(7/23)	•소금 3되, 담배 10량(7/23, 비인태수)
	약쭈(7/25)	•약쭈(7/25, 비인태수)
서천 가야소도 (서천만호)	돛자리 22장(7/27)	•돛자리 22장(7/27, 서천만호)
고군산 (고군산첨사)	약쭈(7/28)	•약쭈는 이곳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답 함.(7/29, 고군산첨사)

30) 『조선표류일기』 권6. 8월 2일.(음)

	딸감(7/29) 딸감 1단 추가 요청(7/29)	•딸나무 1단(7/29, 고군산첨사) •추가 딸감은 금송정책 때문에 지급이 늦어진다고 답함.(7/29, 고군산첨사)
	닭 3마리, 생선 3마리, 각종 채소 요청(7/29)	•배를 옮겼으나 요청한 물품과 양미를 받지 못했다고 함.(8/2 야스다 기록)
위도 (고군산첨사)	청채 및 생선, 닭 요청(8/2) → 이상의 찬거리는 5~6일 전에 다 떨어졌다고 함.	•부추, 마늘, 2가지 푸른 채소(8/2, 고군산첨사)
옥구현 수도(고군산첨사)	닭과 생선 요청(8/5) 청채 요청(8/5)	•청채(8/5) •닭 2마리, 청채 1단(8/5 오후)
	돛자리 10매 요청(8/7)	•돛자리 10매 지급(8/7)
이가도(임자도첨사, 지도만호)	닭과 채소 요청(8/10)	•닭 3마리, 채소 약간(8/11 새벽)

야스다 일행은 먹거리로 청채(靑菜), 닭고기, 생선, 소금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표류인들의 기력 보충을 위한 식재료이다. 또 오랜 기간 배에서 생활하느라 병을 앓고 있는 동료를 위해 약썩을 요청하기도 했다. 요청 물품들은 대체로 체류 지역에서 바로바로 마련하여 지급되었다. 하지만 역시 기본 양미와 잡물이 미지급되었던 고군산에서는 요청 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야스다가 기록을 남기지 못한 남해안 체류 지역에서는 양미와 잡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대포에 머물면서 정리한 내역을 보면 고군산을 제외하고는 체류 지역에서 소홀하지 않은 접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접대받은 양미와 잡물 여분이 많아 일본으로 귀국할 때 별도로 양식을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요청³¹⁾하기도 했다. 일본인 표류인들이 부산의 다대포와 우암포에 머무는 동안 동래부에서 지급하는 요미(料米)와 잡물 외에 동래부사, 부산첨사가 보내는 잡물, 후의(계절물품) 등도 추가로 넉넉하게 받았다. 물론 표착했던 비인현에서 조선 배를 갈아타며 부산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체류지에서의 접대 지급 양미와 잡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체류지에서의 접대 음식

표류왜인이 동래부로 들어와 머무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대마도 왜인 타도 왜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전별연을 베풀어 주었다. 연향을 베풀어주는 것은 1637년 호키(伯耆州) 표류민 송환이 시초였다.³²⁾ 이후 1646년 에치젠[越前州] 표류민³³⁾이 동래에 머물다 돌아갈 때, 1665년 이즈미[和泉州] 표류민³⁴⁾에게 다상(茶床)을 차려 연향을 베풀어 준 기록이 확인된다. 그리고 1791년 가가[加賀州] 표류민³⁵⁾, 1802년 무쓰[陸奥州] 표류민³⁶⁾, 1804년 가가[加賀州] 표류민³⁷⁾, 1811년 사쓰마[薩摩州] 표류민³⁸⁾, 1819년 야스다 일행에게는 ‘궤연(饋宴)’이라는 용어로

31) 『조선표류일기』 권7. 1월 10일.(음)

32) 이훈, 앞의 책, 187쪽.

33)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646년 2월.

34)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665년 8월.

35)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791년 9월.

36)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802년 7월.

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동래부에서 마련해주는 연회 음식 외에 야스다 일행은 체류지를 떠날 때에도 조선 조정이 마련해 준 음식이나 지방관들이 베풀어주는 사연(賜宴) 접대를 받고 있다. 이는 야스다가 어느 정도 신분과 직책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류지역에서의 사연(賜宴)은 지방관이 개별적인 정으로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해도 조선 조정에서 별도로 연회 음식을 지급해 주는 것은 어느 기록에서는 찾기 힘든 장면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선 조정에서 내려주는 전별연 등의 음식상에 올라간 음식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 어떤 종류와 규모의 음식상이 차려졌는지 확인하기는 힘들다. 아마도 이는 야스다가 지방관이 베풀어주는 음식상을 더 좋아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특히 비인현 태수가 마련해 준 전별연 음식에 대해서 ‘조선 조정에서 준비해 준 음식보다 훌륭하고 맛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⁴¹⁾을 보면 야스다의 감정적인 측면도 음식상에 대한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야스다에게 베풀어 준 사연(賜宴) 음식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체류지역 지방관이 마련한 사연(賜宴) 음식

사연(賜宴) 준비 주체	상 음식	비고
비인태수(7/8)	·흰 떡. 꿀. 국수. 쇠고기 수육. 쇠고기 채소국. 가지(된장으로 버무림). 수박. ·술 : 계당주(桂糖酒)	·개인별로 개별상. ·상은 네 다리 소반. ·도기(陶器) 7개(나무 그릇, 질그릇 접시가 섞임)
비인태수(7/21)	떡, 면, 쇠고기 육포, 감 조각, 생꿀, 식초, 생전복, 수박.	·아랫 사람 19인은 조선의 작은 배 위에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베풀. ·중급 무사 3인은 자신들의 배에서 장복(章服)을 입고 절을 하며 음식을 받음. ·사람마다 개별 식탁이 있고, 식탁마다 도자기가 8개
비인태수(7/25)	반월병(半月餅, 송편?). 참깨떡(眞荳餅). 황청(黃淸, 황꿀). 설탕. 국수. 쇠고기. 거위고기. 해파리설탕즙(海月糖汁). 쥐참외(王瓜). 비오리알(水鷄卵). 가리고(加里膏). 돼지고기	·비인태수 윤영규, 마량첨사 이동형(李東馨), 절충장군 이종길 對面 야스다, 히다카, 카와카미 (서로 마주 앉음) ·사발 같은 접시에 음식을 담음
공청도 서천진 만호(朴泰茂)(7/27)	면. 돼지고기. 수박. 대추. 감	주안상
수도 고군산진첨사(8/6)	·고군산진첨사 조대영, 절충장군행수군 첨절제사 박국량(朴國良), 수군 만호 오자명(吳子明). ·처음에 오자명에게만 소반[盤]에다 음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바구니 같은 그릇에 담아서 자리 위에 그냥 깔아 놓음.	

41) 『조선표류일기』 권5. 7월 25일.(음)

	·조대영이 음식을 권유하였지만 일본인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술만 먹음. 조대영이 다시 강력하게 권하자 오자명의 소반 위 음식 중 약간의 계란과 고기를 먹음.
--	---

야스다 일행이 비인현에 표착하여 23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체류하였으므로 타 지역보다 자주 사연 접대를 받았다. 특히 비인현을 떠날 때에는 특별히 조선 조정에서 음식을 마련해 주어 전별연을 베풀어주기도 했다.⁴²⁾ 하지만 야스다는 조선 조정의 전별연 음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 대신 비인태수가 베풀어주는 사연 음식의 종류와 상차림은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비인태수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특히 사연이라도 음식상을 받을 때에는 중급무사들은 의복을 갖추어 입고, 서로 대면하고 배례를 하면서 음식상을 받는 등 격식을 갖추고 있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이 때문에 수도에서 고군산진첨사 일행이 베풀어주었던 사연에서는 야스다 일행에 대한 격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고군산진첨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즉 한 사람에게만 제대로 된 소반에 음식을 갖추어주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각자 제대로 된 소반에 모두 주든지, 아니면 자리 위에 모두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첨사 조대영은 오자명의 소반을 장막 밖에 내려놓고 야스다 일행들과 서로 마주하여 음식을 먹었다.⁴³⁾

격식을 따지는 야스다의 모습은 일반적인 표류민에게서는 볼 수 없다. 특히 도해량미(渡海糧米)를 챙기기를 끝까지 권유하는 쓰시마 역관과 넘치는 접대를 받았으니 도해량미는 사양하겠다고 하는 야스다의 모습은 매우 극적인 대조를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기록의 가치는 충분한 것이 아닐까?

5. 맺음말

『조선표류일기』는 조선에서의 표류인에 대한 접대 규정과 실제 접대 사례와의 간극을 좁혀볼 수 있는 기록이다. 특히 색감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삽화와 꼼꼼한 필담 기록은 여러 연구자들의 의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표류일기』를 통해 조선에 표착한 일본표류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부산(동래부)까지 호송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체류지에서 받은 접대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로 조선 측의 접대 규정과 실제로 받은 접대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민이나 상인 등 일본표류민과 접대의 차이는 없었는지 구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과 관련해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결론을 대신하겠다.

첫째, 야스다 일행은 표착지인 충남 서천에서 부산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호남이나 영동의 여러 도에 표류한 타도표왜(他島漂倭)’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보낸 문정관(問情官)에게 문정을 받은 후 조선의 배를 갈아타는 체선(遞船) 방법으로 다대포로 이동, 한 달 후 우암포로 이송되었다.

둘째, 표착지를 비롯하여 각 체류지에서는 해당 지역 부담으로 양미와 잡물이 지급되었다. 양미와 잡물 중 기본적으로 쌀은 1인 하루 3되가 기준량이었고, 배 1척당 3단의 쌀감도 기본 제공되었다. 하지만 일부 체류지역에서는 이 기본 접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

42) 『조선표류일기』 권5. 7월 25일.(음)

43) 『조선표류일기』 권6. 8월 6일.(음)

야채, 소금, 생선, 닭고기 등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물품이 있을 때에도 대체로 다 보급되어 야스다 일행은 표류인 구호물품에 대해 만족하였다.

셋째, 표착지와 체류지에서는 연회(宴會)의 형태로 음식접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동래부에서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전별연(餞別宴)을 베풀어주는 규정이 있어 야스다 일행은 연향 음식 접대를 받았다. 이 접대는 야스다가 중급무사였기 때문에 동래부사의 요청에 의해 일반 표류민들보다 더 융숭한 접대를 받았다. 또한 표착지에서도 조정에서 별도로 내려주는 연향 음식을 제공받고 있다는 점은 표류민에 대한 접대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착지와 체류지에서는 규정에 의한 공식적인 음식 접대 외에도 사연(賜宴)의 형태로 야스다 일행에게 특별한 음식 접대를 제공하였고, 야스다는 특히 표착지였던 비인현 태수의 접대를 흡족해 하였다.

일본표류인들이 귀국하기 전 마지막 접대가 이루어지는 동래부에서의 접대 규정은 대체로 상세하게 남아있는 편이고, 사례 또한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표착지나 체류지가 너무 다양하고, 표류인 자신이 직접 기록을 남기지 않는 한 자세한 접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조선표류일기』는 실제 사례를 접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자료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 자료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부산에서의 접대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빌어 추가로 정리하겠다.